

보도시점 2026. 6. 17.(수) 12:00 / 배포 2026. 6. 17.(수) 08:30
<6. 18.(목) 조간>

공정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

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효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효율로 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단,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의 경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할 예정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포상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21년 제강사 고철담함 건에 지급되었던 17억 5천여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증거수준 최상의 증거로 신고하였다면, 과징금 총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리니언시에 따른 감면금액이 없고 불복절차 완료 후 최종 확정된 과징금액인 경우

기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포상금 = 과징금액 구간별 요율 금액의 합산 × 포상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포상금 = 과징금액의 10% × 포상율
<예시> 과징금 6,710억 원이 부과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① 50억 원 × 10% = 5억 원 ② 150억원 × 5% = 7억 5천만 원 ③ 6,510억원 × 2% = 130.2억 원 • 포상금 = (①+②+③) × 포상율(100%) = 30억 원 (최대한도) ※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수준이 최상인 경우	→	① 6,710억 원 × 10% = 671억 원 • 포상금 = ① × 포상율(100%) = 671억 원 ※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수준이 최상인 경우

* 포상율: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최상(100%), 상(80%), 중(50%), 하(30%)

한편, 대폭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만,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최종 과징금의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기본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150만원~1천만원)×포상율

** 잔여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과징금의 10%)×포상율} - 기본포상금

※ 포상금 = 기본포상금 + 잔여포상금

둘째,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에는 ‘거래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을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하였다.

셋째,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을 상향근거를 마련하였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에서 위촉

넷째,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산식 및 표로 나타내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하였다.

이번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1. 포상금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별표1>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개정안

담당 부서	조사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하나 (044-200-4594)
		담당자	사무관	주진아 (044-200-4597)
		담당자	조사관	김보민 (044-200-4599)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년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신고
포상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
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
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
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
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
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 -----
----- 제보된 사건(이
하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 이
라 한다)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
과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대
상 -----.

②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에 과징
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신고
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과징금이 국
고에 납부된 사실(분할납부의 경
우 최초 고지분의 납부 사실)이
확인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별
표1>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포
상금을 지급하며, <별표1>의 산
정기준에 따른 잔여포상금은 과
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행정소송
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지
나거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
가 종료된 것을 말한다)되고 확정
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때로부터 3월 이

②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심사관은 제 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③ (생략)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 결정서 및

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단, 과징금 총액 중 일부만 납입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실제 납입된 과징금을 기준으로 잔여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 신고
포상금심의위원회-----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조사총괄담당관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무관 및 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과징금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확인서는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및 접수할 수 있다.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1. 포상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 기본포상금 =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포상율)

2) 잔여포상금: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잔여포상금 =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포상율)-(기본포상금)

나.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 포상금 =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포상율)

다. 포상금 감액 기준

신고의 공익성, 범위반 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파급력, 신고자의 조사 등에 성실 협조 수준, 신고자의 범위반 행위 가담 여부 및 가담 기간·정도,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 범위 내의 감액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감액비율을 정한 경우 위의 가., 나.의 산정 금액에서 그 비율만큼 감액 지급한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 및 포상을 산정 기준

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계열회사 누락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호 관련)

1)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가) 지급기본액: 10억 원

2) 고발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누락 계열회사 1개당 100만 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나.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2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1,000만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자진신고 감면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범위반 행위사실 1개당 3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내용이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직접적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논의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 또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3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3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적인 증거에 해당되어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법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4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3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증거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당한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고객유인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마. 사원판매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5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3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원판매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원판매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원판매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사원판매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바.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6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3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사.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 1항 제7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8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2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내역(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조건(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또는 지원의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내역(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조건(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또는 지원의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상가격과의 차이 등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한 지원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아.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8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8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2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내역(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조건(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또는 지원의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익편취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내역(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조건(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또는 지원의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상가격과의 차이 등 사익편취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익편취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사익편취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9호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3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내용이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하는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차.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방문판매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15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적인 증거에 해당되어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법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5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하도급법 시행령 제10조2 제4항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 가) 최저 지급기본액: 500만 원
-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 (1) 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범위반 행위사실 1개당 2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
- (2) 위 (1) 이외의 위반행위의 경우: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범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가) 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유기적, 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위의 포상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파. 대리점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항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5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관련)

1)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 최저 지급기본액: 500만 원

나)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 지급기본액: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포상율	판단 기준
최상	10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	8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중	5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	30%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